

예천군 성별영향평가 조례(안) 예고

「예천군 성별영향평가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2 및 「예천군의회 회의 규칙」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19. 3. 22

예천군의회 의장



1. 제정이유

- 예천군의 각종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, 군의 정책 수립과 시행에 있어서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.

2. 주요내용

가. 성별영향평가 대상(안 제5조)

- 군수가 제정 또는 개정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, 군수가 중요한 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, 지방재정법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
- 성별영향평가 대상 제외

나. 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 및 실시, 작성, 반영 등에 관한 사항(안 제6조 ~ 제9조)

-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, 성별 수혜분석,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방안, 그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

하여 성별영향평가서 작성

-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, 정책대상자의 성비 등 정책환경의 성별 특성, 그밖에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이 포함된 성별영향평가서 작성

-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 및 성인지예산서에 반영

다.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 ~ 제17조)

- 위원장(부군수)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
- 당연직 위원 : 기획업무 담당 부서장, 성별영향분석 담당 부서장
- 위촉직 위원
 - 예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
 - 성별영향평가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 -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, 성인지(성평등) 교육 및 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- 위원회의 직무 및 운영

라. 성별영향평가 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(안 제18조)

- 성별영향평가 책임관은 담당 부서장으로 지정
-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,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및 작성에 관한 사항, 성별영향평가결과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, 교육 외 임무 규정

마. 성별영향평가 교육(안 제19조)

- 소속 공무원에 대해 연1회 이상 성별영향평가 교육 실시 규정

3. 제정조례안

- 붙임과 같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성별영향평가법」

나. 신·구조문대비표 : 해당없음

다. 예산조치 : 추후반영

라. 규제심사 : 해당없음

마. 입법예고결과 :

바. 비용추계서 : 해당없음

사. 성별영향분석평가 : 제11조(위원회 구성) 3.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→ 제11조(위원회 구성) 3.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, **성인지(성평등) 교육 및 정책**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반영 예정

5. 의견제출

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**2019년 3월 29일**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의견과 그 이유)

제 정(안)	수 정(안)	수 정 사 유

나. 성명(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의견제출 방법

- 주 소 : 예천군의회 (우 36826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)
- (☎054- 650- 6407, FAX 054- 650- 6409)
- 전자우편(이메일) : murayzzang@korea.kr

예천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성별영향평가법」에 따라 예천군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성별영향평가”란 예천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성별영향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.
2. “성인지 예산”이란 예산의 편성·집행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이 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.

제3조(군수의 책무) ① 군수는 정책을 수립·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5조(성별영향평가 대상)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성별영향

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

1. 군수가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
2. 군수가 중요한 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3년 이상의 주기(週期)로 수립하는 계획
3. 「지방재정법」 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.

1.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
2. 정책이 군민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
3. 조직, 업무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·관리에 관한 경우
4.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성별영향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제6조(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)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1.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
2. 성별 수혜분석
3.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방안
4.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

제7조(성별영향평가의 시기 및 실시) 군수는 대상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대상 정책의 중간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

시행하는 과정에서도 실시할 수 있다.

1.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: 조례·규칙 심의회의 심의·의결 전
2.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획 : 해당 계획의 수립 전
3.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책 및 사업 : 해당 정책 및 사업 계획의 수립 전
4.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: 세출예산안의 예천군의회 제출 전

제8조(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등) 군수는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1.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
2. 정책 대상자의 성비(性比) 등 정책 환경의 성별(性別) 특성
3. 그 밖에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

제9조(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)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 및 「지방재정법」에 따른 성인지예산서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0조(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① 군수는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예천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조정한다.

1. 대상정책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
2.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·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1조(위원회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

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,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기획업무 담당 부서의 장, 성별영향평가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. 다만, 특정 성(性)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.

1. 예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
2. 성별영향평가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3.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, 성인지(성평등) 교육 및 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제12조(위원의 임기)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13조(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위원장은 안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,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.

제14조(간사)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성별 영향평가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.

제15조(위원의 위촉 해제)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.

1.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2.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
3.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경우
4.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

제16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된다.

1.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위원 본인이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
 2.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
-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.
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-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

제17조(수당 등)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「예천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8조(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) ① 군수는 성별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을 담당 부서장으로 지정한다.

②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
2.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및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
3. 성별영향평가결과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
4.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종합·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

기관의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

제19조(성별영향평가 교육) ①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제20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 관 련 근 거 】

□ 성별영향평가법

제5조(성별영향평가 대상)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정·개정을 추진하는 법령(법률·대통령령·총리령·부령 및 조례·규칙을 말한다)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(이하 “대상 정책”이라 한다)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.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는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8조(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등)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성별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출받은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해당

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.

제13조의2(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①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(이하 이 조에서 "지방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 지방위원회의 기능,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14조(성별영향평가책임관과 실무담당자의 지정 및 임무)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성별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성별영향평가업무를 총괄하는 성별영향평가책임관과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
2. 제6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및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
3. 제9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결과의 정책,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반영에 관한 사항
4.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개선 계획의 수립·시행·제출, 개선 조치결과의 제출에 관한 사항
5. 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
6.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종합·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 기관의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③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과 실무담당자의 지정 및 업

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5조(성별영향평가 교육)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성별영향평가 교육 대상자의 범위 및 횟수, 결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